

군산시 훈령 제344호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7월 17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실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중 “가족관계증명서” 를 “기본증명서(상세)” 로 한다.

제51조와 제60조 중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행)

실무직근로자의 정수표(제5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계	행정실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직원	실무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작업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87	147	14	16	8	11	98	33	41	57	4	5
공 보 담 당 관	2	2		1			1					
총 무 과	21	6				4	2			15		
기 획 예 산 과	1	1					1					
새만금국제협력과	1	1					1					
회 계 과	2	2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2	2					2					
민 원 봉 사 과	5	5					5					
인 재 양 성 과	1	1					1					
지 역 경 제 과	1	1					1					
투 자 지 원 과	1	1					1					
항 만 물 류 과	1									1		
해 양 수 산 과	1	1					1					
산 립 녹 지 과	4										4	
환 경 정 책 과	1	1					1					
자 원 순 환 과	46	2		2					41	3		
어 린 이 행 복 과	3	3	1			1	1					
복 지 지 원 과	5	5	5									
가 족 청 소 년 과	4	3					3					1
문 화 예 술 과	1	1					1					
관 광 진 흥 과	5	2	1				1					3
체 육 진 흥 과	21	18		11			7			3		
안 전 총 괄 과	1	1	1									
건 설 과	21	4			1		3	17				
건 축 경 관 과	1	1					1					
교 통 행 정 과	11	11			7		4					
토 지 정 보 과	5	5					5					
보 건 소	14	11					11			3		
농 업 기 술 센 터	10	7	3			1	3			3		
수 도 과	21	5	1			1	3	5		11		
하 수 과	9	2		2				7				
예 술 의 전 당 관 리 과	8	2				1	1			6		
시 립 도 서 관 관 리 과	20	14					14			5		1
박 물 관 관 리 과	15	8	1				7			7		
차 량 등 록 사 업 소	7	7					7					
의 회 사 무 국	9	9				3	6					
소 룡 동	4							4				

【별표 1】 (개정안)

실무직근로자의 정수표(제5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계	행정실무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실무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장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87	149	10	10	7	7	114	31	41	57	4	5
공 보 담 당 관	2	2				1	1					
총 무 과	21	6				1	5			15		
기 획 예 산 과	1	1					1					
새만금국제협력과	1	1					1					
회 계 과	2	2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2	2					2					
민 원 봉 사 과	5	5					5					
인 재 양 성 과	1	1					1					
지 역 경 제 과	1	1					1					
투 자 지 원 과	1	1					1					
항 만 물 류 과	1									1		
해 양 수 산 과	1	1					1					
산 립 녹 지 과	4										4	
환 경 정 책 과	5	2					2			3		
자 원 순 환 과	46	2		1	1				41	3		
어 린 이 행 복 과	3	3	1				2					
복 지 지 원 과	3	3	3									
가 족 청 소 년 과	3	2					2					1
문 화 예 술 과	1	1					1					
관 광 진 흥 과	5	2	1				1					3
체 육 진 흥 과	21	18		11			7			3		
안 전 총 괄 과	1	1	1									
건 설 과	23	5			1		4	18				
건 축 경 관 과	1	1					1					
교 통 행 정 과	13	13	1		5		7					
토 지 정 보 과	5	5					5					
보 건 소	14	11					11			3		
농 업 기 술 센 터	10	7	2				5			3		
수 도 과	22	6					6	5		11		
하 수 과	6	2				2		4				
예 술 의 전 당 관 리 과	9	3					3			6		
시 립 도 서 관 관 리 과	20	14					14			5		1
박 물 관 관 리 과	11	7					7			4		
차 량 등 록 사 업 소	7	7					7					
의 회 사 무 국 소 룡 동	9	9				3	6					
소 룡 동	4							4				

군산시 공고 제2017-1219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세 징수·채납처분에 관련되는 조문과 서식을 분리하여 규칙을 제정함
- 나. 시세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다.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8조)
- 라. 지방세의 체납액정리표 관리,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2조)
- 마.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6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063-454-2473, 팩스 063-453-9183, 전자우편 : ykt762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군산시청 징수과 납세지원계(전화:063-454-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조례안 : 붙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

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

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규정의 개정) 군산시지방세체납처분에따른압류재산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7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8조”로 한다.
- ② 제5조 중 “국세징수법 제5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3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계장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시·군		년시·군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시·군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시· 군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 번호	연시·군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고시 제2017-88호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내역

1.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2. 수혜면적 : 47ha

3. 사업내용 : - 방조제(L=367m)

제체송상 : 파라핏설치 h=0.7m송상, EL(+) 5.0m \rightarrow EL(+) 5.7m

제체보강 : 해측 피복석 0.5 m^2 급 S=1:2.0, 육측 식생옹벽블럭 S=1:0.3

- 배수갑문 : 확장정비 BxHx련 = 1.8x2.0x2련

- 진입로정비 : 콘크리트 포장 B=3.0~6.0m, L=737m, 배수로정비 BxHxL=4.0x1.5x311m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시공상세도면작성비.유수지 정비 등

4. 공사기간 : 2017. 04. 17 ~ 2019. 12. 06

5.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시공회사 : 토목공사 (주)성전건설

6.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신시도>							
방조제	1식	1식	-	방조제 L=367m	방조제 L=367m	-	안전표지판, 가드레일설치
배수갑문	1식	1식	-	1.8x2.0x2련	-	-	1.8x2.0x2련
진입로 및 배수로정비	1식	1식	-	포장 L=737m 배수로 L=311m	포장 L=737m 배수로 L=116m	배수로 L=195m	배수로 L=311m
부 대 공 사	1식	1식	-	가설사무실 유수지정비	가설사무실 유수지정비	시공상세도작성 시험비	시공상세도작성 중기운반

7. 보완내용

구 분	보완 내용			사업비 (천원)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업량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575,505	
낙찰차액				△575,505	
단가인상				-	
○순공사비				△575,505	
·토 목	1식	1식		△563,335	- 낙찰차액
·기 계	1식	1식		△12,170	- 낙찰차액
·전 기	1식	1식		-	- 변동없음
○지급자재대				-	- 변동없음
○기타공사비				-	- 변동없음
○보 상 비				-	- 변동없음
○기 타				-	
- 측량설계비				-	- 변동없음
- 공사감독비				-	- 변동없음
- 사업관리비				-	- 변동없음
- 잡 지 출					

사업비 수지예산서

■ 지구명 :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당 초 승인액	금 회 승 인 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16까지	'17시행	'18이후	
합 계	5,821,000	5,245,495	△575,505	100,000	2,524,777	2,620,718	
국 고	4,075,000	3,672,000	△403,000	70,000	1,767,000	1,835,000	
지 방 비	1,746,000	1,573,495	△172,505	30,000	757,777	785,718	
기 타							

□ 지 출

(단위:천원)

과 목	당 초 승인액	금 회 승 인 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16까지	'17시행	'18이후	
합 계	5,821,000	5,245,495	△575,505	100,000	2,524,777	2,620,718	
▣ 공사비	4,016,207	3,440,702	△575,505		1,897,184	1,543,518	
○ 순공사비	3,174,725	2,599,220	△575,505		1,510,000	1,089,220	
· 토 목	3,043,658	2,480,323	△563,335		1,510,000	970,323	
· 기 계	70,017	57,847	△12,170			57,847	
· 전 기	61,050	61,050				61,050	
○ 지급자재대	764,282	764,282			310,718	453,564	
○ 기타공사비	77,200	77,200			76,466	734	
▣ 보상비	1,333,459	1,333,459			444,055	889,404	
▣ 기타	471,334	471,334		100,000	183,538	187,796	
○ 측량설계비	123,183	123,183		100,000	23,183		
○ 공사감리비	278,237	278,237			129,932	148,305	
○ 사업관리비	69,914	69,914			30,423	39,491	
○ 잡 지 출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내역

■ 지구명: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단위: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 승인액	연도별내역			보완후증감내역						비고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입찰 차액	기타	
합계	5,821,001	5,245,496	100,000	2,524,777	2,620,719	△575,505					△575,505	
■공사비	4,016,207	3,440,702		1,897,184	1,543,518	△575,505					△575,505	
○순공사비	3,174,725	2,599,220		1,510,000	1,089,220	△575,505					△575,505	
·토목	3,043,658	2,480,323		1,510,000	970,323	△563,335					△563,335	
·기계	70,017	57,847			57,847	△12,170					△12,170	
·전기	61,050	61,050			61,050							
○지급자재대	764,282	764,282		310,718	453,564							
○기타공사비	77,200	77,200		76,466	734							
■보상비	1,333,459	1,333,459		444,055	889,404							
■기타	471,334	471,334	100,000	183,538	187,796							
-측량설계비	123,183	123,183	100,000	23,183								
-공사감독비	278,237	278,237		129,932	148,305							
-관리비	69,914	69,914		30,423	39,491							
-잡지출												

군산시 고시 제2017-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6호 (2017. 07. 11.)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9
 - 성명 : 이 형 민
- ③ 허가목적 : 어구야적장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413번지 인근
- ⑤ 면 적 : 267㎡
- ⑥ 허가기간 : 2017. 7. 11. ~ 2017.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17-92호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군 산 시 장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부터 제158조 까지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금강권 관광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 교류와 기반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금강권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방법은 “가·나·다 순” 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③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④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에 둔다.

② 협의회에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사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집행을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는 다음해 회기년도 개시전(매년1회)에 개최하며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사업의 결정, 기타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정례회 및 임시회시 회원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부단체장 및 관련업무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⑤ 실무협의회는 단위사업 추진 시·군에서 소집하며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한다.

- ⑥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업무담당(6급상당) 및 담당자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협의회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토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는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 발전에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협회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사무국장이 정례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협회 회원의 전원 참석과 참석 회원의 전원 의결로 한다.

② 협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해당되는 각 지방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 2017-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개정면 통사리 임대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진경건설 대표이사 이정순
 -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3. 시공자 : 변경없음
 - 가. 명칭 및 대표자 : (주)진경건설 대표이사 이정순
 -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42, 407호(나운동 동아26빌딩)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변경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20,936.0000㎡
 - 다. 건축면적 : 4,396.4715㎡
 - 라. 연 면 적 : 67,057.2220㎡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17~25층, 492세대

- 전용 59.7246㎡	180세대
- 전용 84.4755㎡	88세대
- 전용 84.9562㎡	134세대
- 전용 84.5076㎡	90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68,840,954천원

아. 사업기간 : 2015. 07.03. ~ 2018.12.31.

5. 주요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07. 03. ~ 2018. 05. 30.	2015. 07. 03. ~ 2018. 12. 31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7년 7월 13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94호

도로명주소(부여·분할·합병·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분할·합병·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11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분할 : 3건

종전 도로명주소	분할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합병 : 1건

종전 도로명주소	합병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129-9, 129-10	전라북도 군산시 동안길 24-5(개정동)	201705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71-1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3길 7(개정동)	201705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99-2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8-1	20170622	20120925	발산의 옛 이름
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17-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157	20170529	20100125	행정리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05-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117	20170516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34-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신기길 136-19	20170608	20090508	신기마을 통과도로
7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12	20170501	20070528	옛날부터 불려오던 이름사용
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76-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문화길 67-10	20170704	20070528	통사리 문화 마을 소재
9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00-6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안5길 45(경장동)	20170526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 성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00-7, 500-9, 500-12, 500-13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안5길 47(경장동)	201705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 성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14-12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13(경장동)	20170623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 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12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48-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2길 39(경장동)	20170526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순번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3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52-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1길 22(경장동)	201705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1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68-2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20-2(구암동)	201706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409-20	전라북도 군산시 궁멀길 47-6(구암동)	201706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54-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우회로 71(나운동)	201705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528-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진장1길 43-17	20170713	20100125	부곡리 진장 마을소재
18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746-6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우곡제길 186-15	20170525	20100125	미산과 후죽사이에 우곡제 소재
1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37-1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오동길 8	20170629	20130325	마을 이름 인용
2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958-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서약길 106-72	2017061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385-1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고척길 57-36	20170428	20100125	대야면 죽산리 고척 마을 소재
2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518-1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용절길 48-1	20170626	20100125	죽산리 용절 마을 소재
23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917-18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3길 11(문화동)	20170703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4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917-5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1길 24(문화동)	20170512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8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45(미장동)	20170420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순번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2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1-3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279(미장동)	20170501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2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1-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3(미장동)	20170501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2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2-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253(미장동)	20170601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2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2-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257(미장동)	20170626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3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3-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6길 2(미장동)	20170601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18-1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7길 6(미장동)	20170427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18-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7길 8(미장동)	20170427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7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4(미장동)	20170626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3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7-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6(미장동)	20170626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송동에서 인용
3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0-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길 38(미장동)	20170619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0-17, 540-2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길 40(미장동)	20170629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5-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6길 16(미장동)	20170713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64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111-7(미장동)	20170629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39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33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640(비응도동)	20170619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4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57-5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5-14(산북동)	20170428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41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827	전라북도 군산시 옥녀로 81-16(산북동)	2017052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57-9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길 117-1(산북동)	2017051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01-5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72(산북동)	201705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4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757	전라북도 군산시 입사안3길 46(산북동)	20170602	20110329	마을 지명 인용
4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909-7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 869-67	20170531	20090710	도로 옆으로 탐천이 흐르고 있음
4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089-5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상용전길 19	20170712	20100125	서수리 신상용전 마을 소재
4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165-1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호산길 5-13	20170616	20100125	서수리 호산 마을 소재
4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0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가자길 46	20170620	20100125	서수리 호산 마을의 옛이름
4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696-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73	20170501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5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189-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3길 58-27	20170706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 사용
5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422-1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만동2길 77	20170516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5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08-5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길 90	20170619	20070528	도암리 도암 마을소재
5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8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북일길 112	20170529	20070528	성산면의 옛 지명은 북일면
5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199-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9	20170428	20100125	오성산 옆을 지나가는 709번 지방도로 오성산에서 인용
5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87-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103-7	20170601	20070528	성덕리 성덕
5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522-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 32-20	20170517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 사용
5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60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수십길 37-7	20170626	20070528	여방리 수십 마을 소재
5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182-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452	20170605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5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24-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3길 22	20170612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 사용
6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7-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상작1길 60-10	20170704	20070528	창오리 상작 마을 소재
6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8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상작1길 60-36	20170706	20070528	창오리 상작 마을 소재
62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57-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1길 48(소룡동)	20170420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3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679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50(소룡동)	2017051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0-17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37(수송동)	201706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6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2-16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41(수송동)	2017070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1-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3길 9(수송동, 재민빌 딩)	20170605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67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5-8, 825-9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40(수송동)	20170612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6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8-7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안길 45(수송동)	20170529	20100125	수송중앙로단절
6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34-13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3길 19-1(수송동)	20170516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7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49-2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9길 8(수송동)	20170515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7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84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로 35(오식도동)	20170601	20100125	산업단지개발지역으로 내 섬이름에서 인용
72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84-11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2길 46(오식도동)	20170501	20100125	군장산단개발이전 가도소재
7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77-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55(옥구아동센터)	20170426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7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85-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길 16	20170516	20070528	선제리 선제 마을 소재
7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57-1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자라메길 86-7	20170601	20070528	선제리 오산마을 옛이름
7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57-2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자라메길 84	20170628	20070528	선제리 오산마을 옛이름
7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02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남3길 1	20170428	20141231	신규도로 생성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7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22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남척동길 96-22	2017062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52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16-13	2017051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516-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한말길 29	2017071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 산6-6, 산7-2, 산9-2, 산9-3, 산9-6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로 456(통합위탁관리사무소)	20170605	20090508	고려때부터 선유도를 포함한 인근의 섬 전체를 고군산도라 부름
8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5-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57	20170615	2015021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8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24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2	20170510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84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7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83-16	20170704	20090508	섬이름 사용
8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599	20170515	20090710	새만금방조제 도로
8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617-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대위로 120	20170614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명칭 인용
87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산304-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우동2길 8	20170704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88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244-14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봉황길 31	20170526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89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42-34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돌머리길 10-16	20170609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9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416-26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수반들길 63-12	20170711	20100125	미원리 남서원과 서모 사이에 미산들 소재

순번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9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22-5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소령안길 52-9	20170614	20100125	소령마을소재
92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31-4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소령안길 38-1	20170608	20100125	소령마을소재
9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666-2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안흥길 22	20170616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94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12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43-45	20170626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9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70-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65(조촌동)	2017051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9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70-5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안3길 24(조촌동)	2017051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97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79-58, 682-6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안1길 9(조촌동)	201704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98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679-59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안1길 7(조촌동)	201704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9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43-11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1길 8(조촌동)	2017051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0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46-10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95(조촌동)	20170420	20100125	군산시법원을 관통하는 도로
10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51-9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25(조촌동)	20170428	20100125	고유지명
10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59-6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37-6(조촌동)	20170516	20100125	군산시법원을 관통하는 도로
10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5-1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2길 72(조촌동)	201706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0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74-11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13(조촌동)	20170622	20100125	고유지명
10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98-7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2길 10(조촌동)	201705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0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20-1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1길 48(조촌동)	2017060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07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20-5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1길 46-3(조촌동)	2017061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08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71-107	전라북도 군산시 동지곡길 177-22(지곡동)	2017060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9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249-35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옥흥길 46	20170713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11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24-13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복들길 45	20170710	20070528	증석리 구복마을 소재

<도로명주소 분할 고시 조서>

순번	분할 전 도로명주소	분할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4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2	20170629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4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4	20110729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3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4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476	20170629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도로명주소 합병 조서>

순번	분할 전 도로명주소	분할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83, 83-1, 85(삼학동)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85(삼학동)	2017062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번	도로명주소	폐지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2길 23-3(경장동)		201705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2길 23-4(경장동)		201705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안5길 43-2(경장동)		20170526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안5길 49(경장동)		2017052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11-2(경장동)		20170623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기촌2길 11-1		20170427	20100125	화등리 원화등 마을 소개
7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길 83-18		20170704	20090508	섬이름 사용
8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97(소룡동)		2017061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17-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7호 (2017. 07. 14.)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공항로 262
 - 성명 : (주)삼성종합물류
- ③ 허가목적 : 선유도 공중체험시설 구조선 운영을 위한 계류장 설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56-25번지, 산85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310㎡
- ⑥ 허가기간 : 2017. 7. 14. ~ 2017. 12. 31.까지